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2019. .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가 하수처리장 투입 시의 톤당 천원에서 45천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므로 사용료 책정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후 6개월간의 시험가동 기간 동안 실제 투입비용을 산출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써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수정, 별표2 삭제(안 제9조)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별표 2와 같으며”를 “시행규칙으로 하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u>별표 2와 같으며</u>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 ----- ----- <u>시행규칙으로 하며</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구미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 및 처리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3. 별표 1에서 정하는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

제6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하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용료를 포함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규정에 준용하여 납부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징수교부금 교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